##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17

발의연월일: 2020. 8. 13.

발 의 자:최인호·박상혁·박재호

강선우 • 전재수 • 김병욱

송옥주 • 이학영 • 조응천

권칠승·박광온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며,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그런데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 또는 제재 수준이 다양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교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 을 취소하도록 하며,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원자격의 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 또한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신설 등).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교원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22조의3(자격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 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 22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2조의2(교원자격증 대여·알			
	선 금지)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			
	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u>&lt;신 설&gt;</u>	제22조의3(자격취소 등) ① 교육			
	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자격			
	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			
	<u>다.</u>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격			
	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u>경우</u>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은 제22조에 따른 검정을 받			
	<u>을 수 없다.</u>			
제33조(청문) <u>&lt;신 설&gt;</u>	제33조(청문) ① 교육부장관은 제			
	22조의3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			

(생 략)

제34조(벌칙)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u>1.</u> ~ <u>3.</u> (생 략)

<u>다.</u>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3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3	 	 	

- 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